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10월 5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월 4일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10. 4.(월)	담당부서	에너지안전과
담당과장	홍순파 과장(044-203-3980)	담 당 자	최재영 사무관(044-203-3982)

「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」 고시 개정을 통해 기술기준 제·개정의 상호 검증기반 체계 확립

- 기술기준 제·개정 안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·검증 절차 마련
- 신(新)기술 등 적기 도입을 위한 「신속 처리 안건(패스트트랙)」 제도 도입 등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문승욱)는 「**전기설비기술기준*** **운영요령**(고시)」 일부 개정안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

*「전기사업법」 제67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 규정

□ 금번 고시의 개정은 기술기준 제·개정 추진 시 안건에 대한 **전문기관의 검토·확인 절차가 미비**하고,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**긴급을 요하는 안건**의 **제·개정에 장기간**이 **소요**되는 등,

○ 현행 기술기준의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, 고시 개정 시행에 따른 **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음

【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개정 주요내용 】

□ **[검증절차 신설]** 기술기준 제·개정 시 **전문기관**(전기안전공사)**의 검토를 거쳐 현장적용 타당성, 기술적 적정성 등**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임

○ 위탁기관(대한전기협회)이 심의안건을 기술기준위원회(심의·의결기구)에 상정하기 전, **전문기관의 사전검토**를 거치도록 함

□ **[심의절차 개선]** **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**하거나, **부득이한 사유(감염병 확산 등)**가 있을 경우 **서면으로 심의·의결**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,

○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**긴급을 요하는 제·개정 안건**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**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**(전문委 심의 생략)할 수 있도록 **'패스트트랙'** 제도를 도입함

< 기술기준 제·개정 절차 개선 >



□ 산업부는 고시 개정으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통해 **기술기준 운영에 상호 검증기반 체계를 확립**하고,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안전기술을 적용한 혁신 신(新)기술, 신제품 등이 **적기에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** 기대하고 있으며,

○ **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의 합리화**를 위해 **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**임

【붙임】 「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」 개정 주요내용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최재영 사무관(☎044-203-39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「전기설비기준 운영요령」 개정 주요내용

